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인프라펀드¹⁾) 설립 시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²⁾라 하더라도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3항 단서 신설).
-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 한도를 상향하고(안 제41조의5),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외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43조제1항제4호 신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사모 집합투자기구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을 보고받은³⁾ 경

1) '투융자집합투자기구'란 사회기반시설사업(SOC)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투융자회사')와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투융자신탁')을 통칭하는 것으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 '인프라 펀드(INFRAstructure FUND)'로도 불리움. '투융자회사'와 '투융자신탁'은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으로 보므로,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음.

2)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는 펀드(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가 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의 펀드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은 투자자의 자금 회수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는 그 존속기간을 반드시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1항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는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나, 지난 2015년 법률 개정예 따라 '사모'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전등록제'가 '사후보고제'로 전환된 바 있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6).

우에도 이를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41조의6제1항).

II. 검토의견

1.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확대 범위 명확화 (안 제43조)

현행법 제43조⁴⁾제1항에 따르면,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투자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산운용 범위 확대를 통한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활성화 차원에서,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 외의 투자를 함에 있어, ‘자산총액의 10%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다만, 현행법 제43조제2항은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투자 등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사회기반시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 지분 및 채권의 취득
2.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 및 대출채권의 취득
3.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에 대한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에 의한 투자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②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다.

③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여유자금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국채·공채의 매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 따른 국채·공채와 동일한 신용등급의 채권 및 기업어음의 매입

집합투자기구로서, 이는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형태로만 설립 가능한 투융자집합투자기구와 관련이 없음에도 개정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을 보고받은 경우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나, 현행법 및 개정안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모집합투자구에 대해서까지 그 설정·설립을 모두 통보하도록 할 필요는 없다고 봄.⁷⁾

따라서 안 제41조의6제1항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구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금융위원회가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을 보고받은 경우에 이를 통보하도록 명시하며, 그 밖에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마련하였음.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⑱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100인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249조의11제6항에 해당하는 자만을 사원으로 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이하 생략)

7) 현행 제41조의6 또한 금융위원회에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가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통보를 규정하고 있음.

[안 제41조의6제1항에 대한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41조의6(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3항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 또는 보고서류를 제출받거나 같은 법 제249조의6제2항, 제249조의10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제출일 또는 보고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u>등록신청서와</u> 집합투자규약 등의 모든 첨부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2조제4항에 따른 등록 여부에 대한 결과를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의6(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① ----- ----- ----- ----- <u>등록신청서를</u> ----- ----- <u>제249조의6제2항에 따라</u> <u>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을</u> <u>보고받은</u> ----- ----- ----- <u>등록신청서 또는</u> <u>보고서와</u> ----- ----- ----- -----.
② (생략)	② (개정안과 같음)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